

 POSRI 보고서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정기대 수석연구원, 철강연구센터 (kdchung@posri.re.kr)

[목 차]

1. 중국 내 지식재산권 분쟁 외국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가?
2. 중국 지식재산권 특징
3. 중국에서 한국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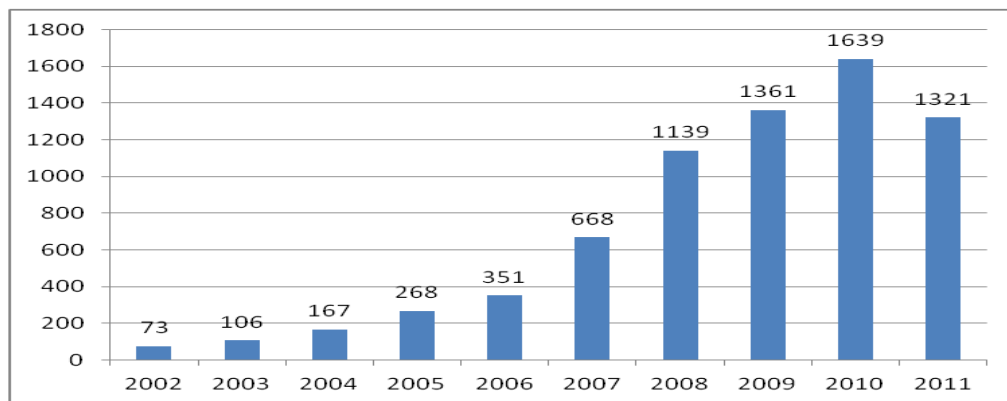
-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중국에서 외국기업 관련 지식재산권 소송건수는 2003년 100건 이상에서 5년 만인 2008년 1,000건 이상으로 10배 수준으로 증가
 - 우리기업은 중국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여전히 팽배한 가운데 지식재산권 권리 확보와 주장에 소극적임
- 그러나 우리기업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도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음
 - 지식재산권 관련 외국원고의 승소율이 75%로 중국원고의 승소율 63% 보다 높고, 배상금도 외국원고가 받는 배상금이 중국원고보다 많음
 - 이 같은 판결의 배경은 중국의 자신감으로,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중국을 위해서라도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 중
- 중국은 한국과 다른 지식재산권법체제와 2심제 재판제도를 보유
 - 우리나라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디자인)에 대하여 각각 독립된 법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은 전리법(專利法)이라는 단일 법체제에서 통일하여 규정
 - 중국법원은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과 지식재산법원이 있으며 재판은 우리의 3심제와 달리 2심제로 운영
- 중국진출 외국기업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일본과 미국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지식재산권관련 미·일 동향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한국기업의 중국 특허출원은 일본,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14년 중국 내 특허출원 : 한국 11,528건, 일본 40,460건, 미국 33,963건)
 - 특히 실용신안 출원은 일본, 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14년 한국 344건, 일본 3,009건, 미국 1,705건임. 중국에서 실용신안은 권리행사에 제약이 없고 특허와 차이가 적어 일본과 미국은 적극 활용 중
- 중국에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침해 당했을 때 대응 방안
 - 중국에서 침해행위 발생시 행정보호와 사법보호를 동시에 추진
 - 지방 보호주의 회피 위해 가능하면 고급인민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선택
 - 자체역량이 부족한 경우 정부의 다양한 지식재산관련 지원제도 적극 활용
- 중국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 중국에서 보호가 필요한 자사 지식재산권을 확인하고 적극 출원
 -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사입장을 대변할 중국지식재산권 전문가 육성

1. 중국 내 지식재산권¹ 분쟁 외국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가?

□ 중국 내 외국기업 관련 지식재산권 소송 빠르게 증가

- 외국기업 관련 지식재산권 소송건수가 2003년 100건 이상에서 2008년 1,000건 이상으로 증가
- 종래에는 특허권자인 외국기업이 원고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최근 중국기업이 특허권자로서 원고가 되어 외국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사례 증가

<중국 지식재산권 외국인(기업) 관련 소송(건)>



출처 : 중국지식산업망

□ 지재권정책과 관련판결 동향을 보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권리도 합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음

- 국무원은 2008년 ‘국가지재권 전략강요’ 발표로 장기발전방향 제시
 - 전략목표는 2020년까지 지재권의 창조, 활용, 보호 및 관리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지재권 집행환경의 개선, 지재권에 대한 인식제고, 지재권을 경제 및 문화발전 건설에 중요한 역할로 활용
- 외국원고의 승소율이 중국원고의 승소율 보다 높음
 - CIELA(중국IP평가분석기구)의 '06~'13년 법원소송 18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원고의 승소율이 75%로 중국원고의 승소율 63%보다 높고, 배상금도 외국원고가 받는 배상금이 중국원고보다 많음

¹ 지식재산권의 압축된 표현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지식재산권과 지재권을 모두 사용

- 중국정부는 지재권을 국가경제발전의 중요 요소로 인식하여 제도개선과 보호 노력

[사례] 락앤락 사건

- 락앤락은 물통용기관련 2004년 중국 디자인 출원 2005년 디자인권 획득
- 중국 모기업이 유사한 물통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고 북경시 중급인민법원에 침해소송 제기
- 2008년 북경시 중급인민법원은 해당 중국기업에 디자인권 침해물품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금 10만위안 지급 판결
- 중국기업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년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락앤락 지지로 최종 판결

출처 : 중국지식재산권법(2011)

□ 외국기업에 대한 전향적 판결의 배경은 중국이 지재권 분야 세계 1위라는 자신감

- 중국의 지재권 출원 규모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1/3
 - '13년 세계 특허출원 260만여 건, 중국 특허출원 82만여 건으로 32% 정도이며 연평균('08 ~'14) 증가율도 20% 이상
 - 상표출원 '14년 200만 건 초과(한국의 10배)
- 지식재산권전략이 방어 일변도에서 일부 공격으로 패러다임 전환 중
 - 지재권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만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특허로 보호되는 원천기술을 다수 확보

□ 그러나 한국기업은 '선 진출, 후 관리'라는 경영전략에 갇혀 중국에서 지재권 보호의 첫 출발인 지재권 권리 확보 노력조차 미흡

- 한국기업의 중국 내 출원은 미국, 일본에 비해 저조
 - '14년 중국 내 특허출원: 한국 11,528건, 일본 40,460건, 미국 33,963건
- 여전히 지재권 등록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 팽배²
 - 중국 진출기업 중 중국에 지재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13%에 불과
 - 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 중 61%가 중국에서 발생되고, 분쟁에 대비해 사전예방 활동을 하는 기업은 30% 미만

² 지재권 피해침해실태조사 기업 2,700여 개 대상('12)

2. 중국 지식재산권 특징

□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지식재산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은 지식산권(知識產權)이며 특허제도는 전리(專利)임

○ 우리나라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디자인)에 대하여 각각 독립된 법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은 전리법³이라는 단일 법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정

- 우리나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은 중국에서는 발명전리권, 실용신안 전리권, 디자인전리권에 해당

<한·중 지식재산권과 법률 비교>

한국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법	지식산권	관련법
특허권	특허법	전리권 (발명전리권, 실용신안전리권, 디자인전리권)	전리법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		
의장권	의장법		
상표권	상표법	상표권	상표법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	저작권법

○ 중국은 전통적으로 형법을 중시하여 민법영역에 속하는 전리제도의 발전은 지체되었으나 최근 법개정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

- 현대적 의미의 전리제도는 개혁개방 이후인 1984년 상당히 늦게 도입되었으나, 1992년 1차 개정, 2000년 2차 개정을 거쳐 2008년 전리법 3차 개정으로 제도적으로는 국제화 추세에 부응
- 1차 개정은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압력, 2차 개정은 WTO 가입 등 외부적 요인이 상당
- 그러나 3차 개정은 국내 특허권 보호수준을 제고하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중국 내부의 필요에 의해 개정함
- 특허보호와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4차 개정 추진 중으로 2012년 8월 전리법 제4차 개정(안)을 공고, 2014년 1월 국무원에 제출

³ 전리법은 전리권자의 합법적 권익보호·발명창조의 장려·발명창조의 응용추진·창조능력의 제고·과학기술의 진보 및 경제사회 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제정한다(전리법 제1조). 전리법에서 발명창조는 발명·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말한다(전리법 제2조 1항).

□ 중국 특허청은 국가지식산업국으로 1980년 설립되었으며 사무소 9개를 운영 중. 그리고 2014년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을 3곳에 설립

○ 지식산업국은 중국전리업무와 해외지식산업 업무를 총괄

- 전리출원의 수리 및 심사를 총괄하며, 전리권 부여업무, PCT 관련 특허국제출원업무 처리
- 전리국 및 전리복심위원회가 있으며 지방의 전리분쟁 및 전리사칭행위의 조사처리업무도 지도

○ 지식재산권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지식이 있어야 판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 설립

- '14년 8월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기로 결정
- '14년 11월 최고인민법원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사건 관할 규정 공포

□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면 행정구제(행정보호)와 사법구제(사법보호)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능

○ 침해행위가 있을 때 동시에 직접 법원소송절차를 거쳐 침해자를 기소하거나 관련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청구하여 침해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을 활용하면 심리, 결정, 단속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특허사건은 행정기관의 기술역량이 부족
- 사법기관은 강제집행 권한이 있어 사건의 최종적인 해결수단이나 변호사 선임에 많은 비용이 들고 최종판결까지 많은 시간 필요

<중국 행정구제와 사법구제 비교>

구분	행정구제(행정보호)	사법구제(사법보호)
처리기간	단기	중장기
비용	저렴	비쌈(변호사 선임시)
절차난이도	간단	복잡
증거요건	비교적 엄격	매우 엄격
집행력	약함	강함
손해배상	판단하지 않음	청구 가능

- 행정적 보호는 관계 국가기관 및 지방 행정기관이 분야별로 분담
 - 중앙정부는 지식재산권의 정책업무 및 등록업무를, 지방정부는 지식재산권의 집행 및 실질적인 관리업무 담당
 - 행정보호 대표기관인 국가지식산업국은 전리권 침해행위, 전리사칭행위, 전리 허위표시를 단속하고,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상표권 침해행위를 단속
- 사법적 보호는 권리 침해자를 상대로 형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침해자에 대해서 형사, 민사적 책임을 추궁
 - 한국은 3심제이지만 중국은 2심제 운영

<한중 법원 비교>

한국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중국법원
대법원	최고인민법원	
고등법원	고급인민법원(31개)	중요사건의 경우 1심
지방법원	중급인민법원(367개) (지식재산법원(3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영업비밀 1심
지방법원지원	기층인민법원(3,117개)	상표 · 저작권 1심

3. 중국에서 한국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 중국진출 한국기업이 알아야 할 점

- 중국은 지방 보호주의의 영향으로 지방에 따라 판결 결과가 상이함.
따라서 지방 보호주의를 감안한 소송법원 선택 필요
 - 중국은 지식재산권의 승소율, 실제 손해배상액 등에 있어 지역간 차이가 나고 그 격차도 비교적 큰 편
 - 북경, 상해, 천진 등 직할시 및 광저우, 항저우 등 각 성의 대도시에서는 법규정을 엄격히 하여 침해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음
 - 반면, 기타 중소도시, 특히 침해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처벌 강도가 약함
 - 중앙보다는 지방이 중국 국내기업에 대한 보호주의가 만연하여 가능하면 중급인민법원에서 제1심을 진행하기보다는 고급인민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

- 이 경우 중국은 2심제 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최종심을 베이징 최고 인민법원에서 받을 수 있고 지방 보호주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중국에서 특허권과 상표권은 한국기업 명의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이 중국에서의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중국파트너 기업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음
 - 그러나 중국 파트너 교체 등 경영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 중국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중국 파트너가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위험 증대
- 중국 실용신안은 특허와 달리 기초요건만 심사하는 무심사제도를 운영⁴하고 있는데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유용한 제도
 - 중국 실용신안은 권리행사에 제약이 없고 특허와 차이가 적음, 보호기간도 길고, 신속한 권리 획득이 가능하고, 특허대비 진보성 기준이 낮아 무효화도 잘되지 않음
 - 중국진출 미·일 주요 기업은 최근 실용신안 출원을 급속히 늘리고 있으나 한국기업의 중국 내 실용신안 출원은 저조('14년 기준 한국 344건, 일본 3,009건, 미국 1,705건). 최근 5년간 증가율 한국 10%, 일본 65%, 미국 18%

<중국 특허와 실용신안 비교>

구분	특허	실용신안
심사	실질심사	형식심사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심사처리기간	약 22개월	약 4.3개월
출원비용	4,350위안	1,100위안

출처 : 중국 지재산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15)

- 실용신안 없이 중국에 진출하면 중국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보유한 실용신안권을 통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는 등 권리행사를 어렵게 하거나 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 발생
- 정부는 자체 법률보호역량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활용 필요

⁴ 2013년 9월 실용신안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무검색 원칙을 폐지. 기존에는 실체검사 없이 기초적 요건만 심사하기에 형식상 문제가 없으면 거의 등록되어 등록률이 약 98%에 달함.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명확한 기재불비 뿐만 아니라 신규성에 기반하여 등록이 거절될 수 있도록 하여 등록률이 90%이하로 감소

<해외진출기업대상 지식재산권관련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재권 분쟁대비 맞춤형 법률컨설팅 제공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상표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침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재권 소송보험	지재권분쟁 위험분산을 위해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지원
온라인 침해조사 모니터링	신청상표에 대한 알리바바 그룹 계열 오픈마켓 내 상표사용 현황 모니터링 조사
중국 IP-DESK	북경, 청도, 광주, 상해, 심양에 있으며 상표디자인 출원, 세관 지재권 등록,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지재권 상담, 모조품 식별세미나, 공무원 초청연수, 설명회 등 지원

□ 중국에서 지재권 침해를 당한 경우 대응

○ 침해사건관련 상세 증거자료와 문서 확보

- 철저히 준비된 자료는 중국법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분쟁의 신속한 법 처리 절차를 진행 할 수 있고 중국법원의 중재관련 재판부로부터 증거 자료 불충분 사유로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것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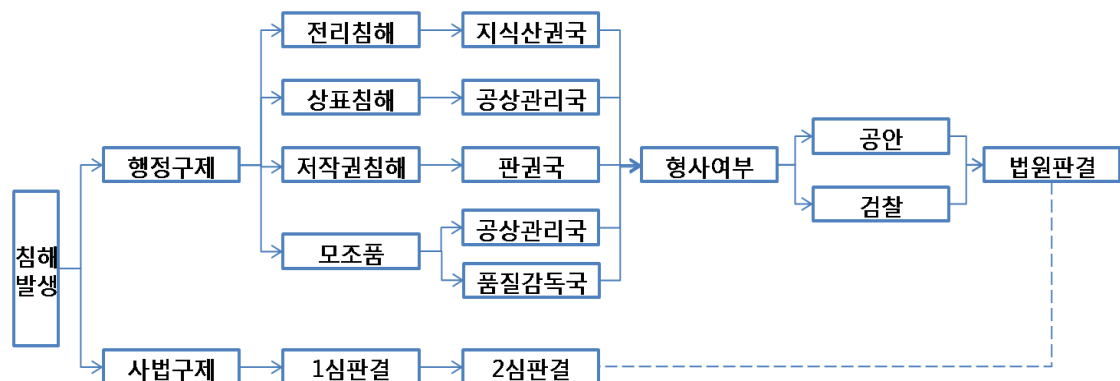
○ 매우 신중하게 분쟁재판부와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현지 중재인 선정

- 중국은 한국처럼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하기 보다는 자국인 보호 성향이 강해 한국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중재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음

○ 침해자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관에 행정제재를 청구(전리법 제60조)

-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침해의 기준은 권리자가 중국 내에서 유용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침해자는 권리자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산자이⁵를 생산해야 함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행정구제와 사법구제 절차>



⁵ 중국에서 모방품은 산자이(산채, 山寨)라고 함

4. 시사점

□ 중국은 지재권에 대한 인식변화 속도와 제도변화 속도 간의 부조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

- 지재권 관련 제도와 협정은 현대화되고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2014년 지재권 전문법원 설립, 2014년 한·중 FTA 협정문 중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 포함 등
- 그러나 짧은 시간에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재산권에 대한 개념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하였지만 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지재권 개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
 - 따라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면서 세계의 ‘짜퉁’ 공장인 부조화 발생

□ 한·중 FTA타결로 교역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과 침해 소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상당수 우리기업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외국기업의 권리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기업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됨
- 개별기업은 중국과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자체 해결할 내부적인 역량을 키워야 하지만 자체 역량이 부족한 경우 정부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재산지원 프로그램 활용 필요
 - 특히 중국 IP-DESK는 중국전문가의 다양한 조언을 들을 수 있음

□ 결국 중국 지식재산권을 이해할수록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음

- 중국 진출회사는 보유 지식재산권 중 중국에서 보호가 필요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해당 지식재산권 적극 출원
 - 일차적으로 중국이 인정하는 지식재산권을 빠짐없이 등록·출원하는 것이 중요
- 단기적으로 중국 지식재산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중국 지식재산분쟁 경험이 많은 외부전문가 적극 활용

- 상황이 악화되기 전 초반부터 중국 지식재산권 업무에 강점이 있는 국내전문전문가와 긴밀한 협업 필요
-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입장을 전문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중국지식재산권 전문가 육성 필요
- 직원을 중국유수대학법률과정에 유학 보내 전문지식 습득과 더불어 중국과 한국의 지재권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참고자료]

[논문]

노재연,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과 제도 및 분쟁예방전략 연구, 충남대학교, 2015

[책]

윤정화, 중국지식재산권법, 진원사, 2011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Jinhan M&B, 2015

[보고서]

특허청,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 2015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2014

[홈페이지]

특허청 (www.kipo.go.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www.kiip.re.kr)

[언론]

디지털 타임스 "특허청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 개편", 2015.11.4

조선비즈 "울촌, '한중미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 개최", 2015.11.7

연합뉴스 "'중국 진출 위한 지식재산활용 전략' 콘퍼런스", 2015.11.8

연합뉴스 "중, 지재권 보호로 스타트업 창업 지원한다", 2015.11.18

뉴시스 "[지재권과 중국]① 달라진 중국 · · · 지식재산의 압도적 성장", 2015.8.24

헤럴드경제 "국내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중국에서 가장 많아 · · · 미국에서는 특허괴물로 인한 지재권 분쟁이 30%를 상회", 2015.6.23

[기타]

IPMS(IP Management & Strategy,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모임) 중국 분과 발표자료